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보험의 정의 신설 등 〉

■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0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보험의 정의 신설 등	3
※참고자료	11
1.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개요	11
2. 기후보험 개요	13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4일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기후보험의 정의 신설 등

개정안은 ①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기후보험”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18호 신설),

②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후보험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③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을 규정하며(안 제47조의3 신설), ④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u>18. “기후보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말한다. 제47조의2(기후보험의 운영)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관리 등의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 대상, 가입 방식,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7조의3(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운영하는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현행	개정안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기후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 ② (생략) <u><신설></u>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 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38조¹⁾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
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
가에 관한 사항,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에 따라 사회 전 부문의 기후 안전망 구축, 기후 취약지역·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참고자료1), 폭염 등의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지면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 도입²⁾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검토중인 기후보험 설계안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계약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이고, 피보험자는 공공 공사의 근로자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이며, 폭염 경보 발령 등 폭염시 공사 중지를 의무화하고, 공사 중지에 따른 시급 일부를 보장하는 형태로 상품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상품(안) 세부 방안 〉

- **(계약자)** 건설공사 발주 지방자치단체 ※ 특정 계층(집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단체보험)
- **(피보험자)** 공공 공사(1억원 이상) 근로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 **(지수)** 폭염 경보 발령, 폭염시 공사 중지 의무화
- **(보장)** 오후 근무시간(13시) 이전 이상기후 발생하여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하지 못해 **상실된 소득 보장**,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므로 손해사정 절차 생략 * '작업중지 4시간에 대한 시급 일부
- **(보험료)** 지역별 폭염 평균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2) 지수형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특정 지표(강수량, 지진 규모, 풍속 등)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충족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별 언더라이팅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출처 : 한국공제보험신문, “기후변화 시대, 지수형보험이 뜬다”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55>)]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업으로 기후보험을 운영중인 사례가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풍·호우·대설·폭염 등 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표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이나 특정 감염병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 취약계층에는 강화된 보장내용을 두고 있음.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서류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보상 (연1회 제한)	10만원	<공동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3. 동상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 공동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동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 공동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의료기관 교통비> ○ 공동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간급이후송 지원> ○ 공동서류 + 진료확인서 + 구급차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 공동서류 + 초진기록지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보상 (연1회 제한)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 (당기열, 웨스트나일열, 켄트키우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병 진단 시 보상 (사고당)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경기도민(4주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30만원	
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사고당)	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10회 한도)	2만원	
	기후재해 긴급 이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시설 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사고당)	50만원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5회 한도)	1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경기도민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한하여 보상가능함

출처: 경기 기후보험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231&menuId=1534064>)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우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상하고 있고, 홍콩 및 마카오는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또는 고온 스트레스 관련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기후보험 관련 해외 사례]

□ (인도)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대상 폭염에 따른 임금 손실 보상

- 일정 기온(40℃)이 넘어 이틀 계속되면 가입자에게 임금 손실 보상
 - * 농업, 폐기물 재활용업자, 노점상, 일용직 등 날씨 영향을 받는 여성 야외 노동자
- 보험료는 여성 1명당 연간 250루피(약 4,000원) 수준, 기온 40℃ 초과 시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400루피(약 6,500원) 지급

□ (홍콩 & 마카오)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또는 고온 스트레스 관련 상품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야외근로자의 위험 증가 우려, 건설근로자, 공공시설근로자, 운송 관계자 등이 대상
 - * 홍콩 연평균 기온, 1994년부터 10년마다 0.30℃씩 상승 추세
- 보험료는 1인당 19.90 홍콩달러(약 3,650원), 트리거 충족 시 100홍콩달러(18,000원) 또는 동일 가치의 폭염 대비 키트 지급
 - * 트리거 기준 : 36.0℃ 이상 고온이 3일 연속 발생, 보험 적용 기간: 매년 8월 ~ 10월

이에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기후보험으로 정의하고, 기후보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적응체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기후위기보험의 정의 및 운용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들에 기후보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동 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³⁾,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 근거 등은 기본법 성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닌 적응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⁴⁾이며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 상황이므로 기후보험 규정 신설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예산처의 의견과, 향후 보험 대상 및 지원범위가 확정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경우 64개 의무보험을 관리하는 재난안전의무

3) 임이자의원안(의안번호 제2203992호) 제15조, 차지호의원안(의안번호 제2212695호) 제19조, 김소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16540호) 제18조~제20조, 조지연의원안(의안번호 제2216716호) 제18조에서 각각 기후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4) 2026년 수행 예정이며, 관련 예산 3억원 확보

보험 종합정보시스템⁵⁾을 2024년 구축·개통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임.

문 의 처
02)6788-5536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보험²⁴(<https://www.ins24.go.kr/main.do>) 운영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참고1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개요

- (법적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대책기간) '26~'30년(5년간)
 - ※ (1차) '11~'15, (1차, 보완) '13~'15, (2차) '16~'20, (3차) '21~'25, (3차, 강화) '23~'25
- (수립절차) 관계부처 합동 수립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확정
- (제4차 대책 추진 체계도)

비전

사회전반의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국가 실현

목표

국토 공간
전반의
기후회복력 제고

사회 전부문
촉촉한 기후
안전망 구축

범부처 합동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전략 ①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 ▶ (물관리)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홍수가뭄 대응
- ▶ (생태계·산림) 생태계 기후 회복력 제고
- ▶ (국토·연안) 국토·연안의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혁신

전략 ②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 ▶ (농수산) 기후위기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
- ▶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회복 안전망 구축
- ▶ (산업·경제) 기후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이행 기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 ▶ (제도) 과학적 기반의 추진체계 강화
- ▶ (재난대응) 신속하고 정확한 기후재난 대응
- ▶ (협력)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 기후 취약계층 관련 내용

①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지원

- (조사)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기존3개 시범)를 전국 확대하여('26~) →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효능감 제고, 지자체 대책에 반영
 - * 연령, 소득, 지역 등 요인 복합적으로 고려 → 피해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 정책 반영
 - ※ 취약계층 정의, 실태조사, 정책 지원 등 법제화 추진
- (주거 환경) 재해취약주택^{*}에 침수방지시설(경보장치, 차수관 등) 등 설치, 곰팡이 등 환경유해인자 차단을 위한 실내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추진
 - *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공공·민간 임대 이주 지원 등 병행(연간 1만 가구)

②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 (기후보험) 폭염 시 야외근로자의 생업·생계 피해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추진('26~, 시범·확대 검토)
 - * 별도의 손해 사정 없이 일정 지표(기온 등) 도달 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 (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연 36.7만원) 지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 확대^{*}(^{'25년}130만→^{'30년}150만가구)
 - * 에너지복지 실태조사('26~'27) 기반으로 에너지 빈곤지표 도출 →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③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 (평가) 제2차 기후보건 영향평가('26년) 시 평가지표를 확대(31개 → 70여 개)하고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통해 기후보건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 (이용권) 건강 민감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기존어린이 → 개선임산부 등 초 민감계층 대상)
 - * 환경성 질환 예방 관련 상품서비스 및 실내환경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 (심리) 기후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현장 대응인력 등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 안정 지원^{*}
 - *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 마음안심버스(50대) 운영 등

□ 도입 배경

-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기후리스크 증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립 및 경제 활동 감소 등 문제 발생
- 야외근로자는 이상기후로 작업 중단 시 임금 손실에 따라 경제적 부담 가중, 경제적 피해 최소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추진경과

- (협의체) 기후부(제도·재원), 보험업계(상품개발·운영), 전문가 등 기후보험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5.3~)
- (보험안 검토) 협의체에서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즉각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지수형보험* 검토
 - * (개념) 객관적인 지표(parametric)를 기준으로 사전에 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사업내용 [1단계 : 시범사업(공공건설근로자) → 2단계 : 본 사업(단계적 확대)]

- (1단계) 보험운영방식, 보험료 산정, 보상체계, 데이터 전송 등 시범 적용, 정책의 효과성 및 상품의 적합성 검증 등 추진('26)
 - * ('26년 예산) 기후보험 운영 기반 마련 연구* 추진을 위한 3억원 반영
 - 자료 송수신 시스템 데이터 확보 등 보험 활성화 및 효과분석 연구
- (2단계) 시범사업(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보험 대상, 규모 등 단계적 확대 추진('27~)

□ 사업 세부방안

- (피보험자) 공공 공사(1억원 이상) 근로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제외)
- (계약자) 폭염 정보 발령시 공공 공사 야외근무 강제 중단을 의무화한 지자체
- (보장위험) 오후 근무시간(13시) 이전 이상기후 조건(폭염 정보 발령)이 발생·지속되어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이뤄진 경우 작업중지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 보상
- (보험금) 이상기후(폭염 정보) 발생으로 작업을 중단한 시간에 대한 근로소득 일부
- (특징) 손해사정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빠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으로 설계
- (피보험자 적정성 확인 방법) ^(가칭)기후보험 시스템(구축 계획 중) 운영을 통해 피보험자의 출퇴근시간, 작업중단 사유 등 확인

< 해외 사례 >

□ (인도)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대상 폭염에 따른 임금 손실 보상

- 일정 기온(40℃)이 넘어 이틀 계속되면 가입자에게 임금 손실 보상
 - * 농업, 폐기물 재활용업자, 노점상, 일용직 등 날씨 영향을 받는 여성 야외 노동자
- 보험료는 여성 1명당 연간 250루피(약 4,000원) 수준, 기온 40℃ 초과 시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400루피(약 6,500원) 지급

□ (홍콩 & 마카오) 야외근로자 대상 폭염 또는 고온 스트레스 관련 상품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야외근로자의 위험 증가 우려, 건설근로자, 공공시설근로자, 운송 관계자 등이 대상
 - * 홍콩 연평균 기온, 1994년부터 10년마다 0.30℃씩 상승 추세
- 보험료는 1인당 19.90 홍콩달러(약 3,650원), 트리거 충족 시 100홍콩달러(18,000원) 또는 동일 가치의 폭염 대비 키트 지급
 - * 트리거 기준 : 36.0℃ 이상 고온이 3일 연속 발생, 보험 적용 기간: 매년 8월 ~ 10월